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7. 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7월 15일, 임호선의원 등 16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7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4.8.26.)

상정·제안설명·검토보고·대체토론·소위원회부

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3.20.)

상정·축조심사·의결(수정가결)

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(2025.6.23.)

상정·소위심사보고·축조심사·찬반토론·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임호선의원)

기후변화로 인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꿀벌 개체 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(受粉)을

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을 뿐 아니라 산림 등에 자생하는 초목의 생식에도 영향을 주는 등 꿀벌의 산업적,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벌꿀의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밀원식물(꿀벌이 꽃꿀,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)에 대하여는 그 증식·확충 등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, 정작 개체수 확보 등 꿀벌의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.

한편 현행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면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통해 위기동물을 보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생태학적 중요성이 큰 꿀벌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보호 및 관리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꿀벌의 보전,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·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2 신설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용훈)

□ '21년 겨울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(Colony Collapse Disorder)이 발생하였는데, 농림축산식

품부에 따르면 월동 중인 꿀벌 약 40만 봉군(약 78억 마리)이 폐사되는 등¹⁾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류²⁾, 말벌류의 공격,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이번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하였고³⁾,

이로 인해 양봉산업은 물론 꿀벌을 활용해야 하는 과수농업과 일반 산천초목의 수분까지 큰 타격을 입었음.

-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꿀벌의 보전·분양 등을 위하여 보전시설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되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보전시설의 비용을 농식품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개정안에 따라, 꿀벌 관련 생태계를 선제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, 꿀벌 생태계의 보존·유지를 통해 양봉·과수산업의 지속적·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현행법 제12조⁴⁾에서는 양봉산업 진흥을 위하여 양봉 관

1) 월동 꿀벌 피해로 인한 사업 피해는 제한적(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, 2022.04.07.)

2) 응애 : 병해충의 일종으로,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

3) 전국 양봉농가 월동 꿀벌 피해 민관 합동 조사결과(농촌진흥청 보도자료, 2022.03.13.)

4)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양봉 관련 시설·기자재 및 양봉 산물·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

2. 꿀벌 신제품 육성·보급 사업

3.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

4.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

5. 꿀벌 및 양봉 산물·부산물의 유통·판매

련 시설 등의 설치, 꿀벌 신품종 육성·보급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·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농진청에서는 「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⁵⁾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립농업과학원훈령 제225호)에 근거하여 꿀벌 보전시설인 ‘꿀벌 위도 격리 육종장’을 이미 운영중⁶⁾에 있으므로, 별도의 꿀벌 보전시설 관련 지원규정은 현행 법 제12조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육종장에서 개발한 우수 꿀벌 품종을 농가에 확대 보급·분양하기 위해서는 시·군단위의 보존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는바,

개정안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·운영·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신설하면, 꿀벌 생태계의 보전·분양·관리를 보다 체계적·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5) (육종장):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곳.

6) 「국립농업과학원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운영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기능) 꿀벌위도격리육종장(이하 "육종장"이라 한다)는 농업생물부 양봉생태과 소관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.

1.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
2. 꿀벌 산물별 생산성 우수 품종 육성 연구
3. 꿀벌 질병저항성 계통 선발 및 육성 연구
4. 우수 여왕벌 생산(원원종) 및 보급

- 한편, 안 제14조의2제1항은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·지원 주체를 ‘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’으로 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에 따르면 ‘시·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’는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서 배제됨.

따라서,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의 주체를 유사 입법례⁷⁾를 참고하여 ‘국가와 지방자치단체’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‘꿀벌 보전시설’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, 이를 현재 사업을 실시⁸⁾하고 있는 ‘꿀벌 격리 육종장 및 증식장’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7)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

제3조(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6조의2(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)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
2.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,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·연구기관(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,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8) 농진청에서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전복 위도에 ‘꿀벌 위도 격리 육종장’을 설치·운영중이고, 꿀벌 우수 특성 유지 및 대량 증식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증식장 지원사업 추진중

- 한편, 안 제14조의2제1항은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꿀벌의 보전, 분양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과 같이 ‘시설 및 인력 기준’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은바,

‘꿀벌 보전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’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려는 안 제14조의2제1항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이원택)

-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,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등 수정의결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7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-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쳤음.

9. 심사보고서 붙임서류

가.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
수정안

나.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5.

제 안 자 :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, 현행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조문 위치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(안 제8조의2).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, 우수품종 육성 및 분양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(이하 “꿀벌 보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안 제14조의2를 삭제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 설></u>		<u>제8조의2(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)</u> <u>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, 우수품종 육성 및 분양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(이하 “꿀벌 보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4조의2(꿀벌 보전</u>	<u><삭 제></u>

시설의 설치·운영)

① 농림축산식품부
장관 또는 시장·
군수·구청장은 꿀
벌의 보전, 분양 등
을 위하여 농림축
산식품부령으로 정
하는 시설 및 인력
기준에 맞는 보전
시설(이하 “꿀벌 보
전시설”이라 한다)
을 설치·운영할
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
장관은 시장·군수
·구청장이 꿀벌
보전시설을 설치·
운영하는 경우 예
산의 범위에서 그
비용의 전부 또는
일부를 지원할 수
있다.

③ 그 밖에 꿀벌
보전시설의 설치·
운영 등에 필요한
사항은 농림축산식

	<u>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	
--	-------------------	--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,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(이하 “꿀벌 보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,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(이하 “꿀벌 보전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② 그 밖에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u>